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4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7가합5471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	2017가합587282(병합)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원 고	A
피 고	1. B
	2. C
	3. 주식회사 [redacted]
	4. [redacted]시
	5. [redacted]시
	6. D
변 론 종 결	2018. 3. 21.
판 결 선 고	2018. 4. 4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C, 주식회사 [redacted], D 사이에 [redacted]공사가 2017. 5. 22.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로 공탁한 237,121,59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2. 원고의 피고 B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, 주식회사 [redacted],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redacted]공사가 2017. 5. 22.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로 공탁한 237,121,5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D은 2003. 1. 21. 원고에게 [redacted]시 E 답 2,68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"위 토지 지상 건축물도 포함한다"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원고는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등(이하 '이 사건 지장물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'F'이라는 상호의 콩나물 재배 및 판매업을 하였고,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.

다. 피고 B은 피고 D과 그의 처 G(이하 '피고 D 등'이라 한다)로부터 차용금 채무 3,882,947,513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 및 [redacted]공사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대한 위 지장물 보상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보상금 채권'이라 한다)을 양수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등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촉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0. 4. 30. '1. 피고들(피고 D 등)은 [redacted]공사 및 [redacted]시장에게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(피고 B)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2. 피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'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(이하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'이라 한다)이 이루어져, 그 무렵 확정되었다(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0가합2294호).

라. 피고 B을 대리한 변호사는 2014. 3. 21. [redacted]공사에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니 위 보상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달라'는 내용과 위 화해권고결정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, 그 무렵 [redacted]공사에 도달하였다.

마. 한편 원고와 피고 C, 주식회사 [redacted]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는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.

채권자	채무자	제3채무자	근거	제3채무자 도달일자	청구금액(원)
원고	피고 D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10163)	2014. 12. 19.	2,576,785,633
피고 C	피고 D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1373)	2015. 2. 27.	150,000,000
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	피고 D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1448)	2015. 3. 4.	49,250,629
피고 [redacted]시	피고 D		채권압류	2015. 10. 20.	9,979,780
피고 [redacted]시	피고 D		채권압류	2015. 11. 11.	7,010,290

바. [redacted]공사는 H사업의 시행자로서 [redacted]위원회가 수용재결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2017. 5. 22. '피고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고,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 B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, 피고 D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점'을 공탁원인으로 하고, 원고와 피고 B,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237,121,590원을 혼합공탁(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, 이하 '이 사건 공탁금'이라 한다)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가 제2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C, 주식회사 [redacted],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.

나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3. 피고 B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하였고, 비록 피고 B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 자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,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, 을가 제1,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 중 지상 건축물 부분은 2천만 원인 반면,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은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대한 것으로 액수가 2억 3,700여만 원에 달하는 사실,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4. 1. 17.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와 콩나물 살수 기계 등이 소실되었으며 피고 D은 이를 재건축한 사실, ③ 원고는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(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1가단5972호),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이 원고 자신이 아닌 피고 D 등에게 있음을 전제로 철거를 주장하여 인용되었던 사실, ④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피고 D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, 위 대여금에 대한 정산 및 지불각서, 채무 변제에 갈음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과 동일하다고 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, 주식회사 [redacted],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피고 B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손동환

판사 강하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판사 신세희